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8. 25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8.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가. 제안이유

- 무역상담실,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으로 운영되던 민간지원 기구의 중소기업통상지원 기능을 통·폐합하여 기존의 민간지원 기구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경제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안 제3조)
-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기금의 설치, 무역상담실을 폐지하고 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만 존치하여 단일 조례 개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위원수가 너무 많지 않은지?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p>	<p>○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수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성위원도 영입할 계획입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위원수를 15인에서 13인 이내로 조정하면 좋을 것임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 별 첨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362호
의결년월일	2000. 9. 5 (제80회)

제출년월일 : 2000. 9. 1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하여 회의진행과 의결이 원활하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할 수 있는 조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조정
-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글의 문맥상 "의하여"를 삽입하여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로 조정

2. 주요골자

-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수정(안 제3조제1항)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안 제3조제2항)

- 3. 해외자본의 관내유치 및 기업간 흡수·합병 추진에 관한 자문
- 4. 관내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자문
- 5. 실업자대책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 6. 노사정 협력에 관한 자문
- 7. 기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업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관내 기관단체장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인사들 중에서 약간명의 명예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①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재출 요청
-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3.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요청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

제8조(간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 [1998. 10. 10]
조례 제16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기구인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와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의 민간지원기구(이하 "민간지원기구"라 한다) 및 기금, 무역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제자문위원회

제2조(기능)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2.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3. 해외자본의 관내유치 및 기업간 흡수·합병 추진에 관한 자문
4. 관내 기업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5. 실업자대책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6. 노사정 협력에 관한 자문
7.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업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관내 기관·단체장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인사들 중에서 약간명의 명예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①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요청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

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

제8조(간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간 지원 기 구

제1절 외자·기술유치단

제10조(기능) 외자·기술유치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외자 및 기술유치 활동
- 2. 국내·외 기업간 흡수·합병 추진활동
- 3. 국내·외 투자유치 정보 수집 관리
- 4.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유치 지원
- 5. 기타 외자·기술유치와 관련있는 사항의 지원

제11조(구성) 외자·기술유치단은 10인 이내의 외자·기술유치와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 시장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

제2절 해외세일즈단

제12조(기능) 해외세일즈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관내기업 생산품의 국내·외 판매지원
- 2. 판매활동과 관련한 해외정보수집 및 정보제공
- 3.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4. 기타 해외무역과 관련한 제반활동의 지원

제13조(구성) 해외세일즈단은 10인 이내의 무역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 시장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

제3절 운 영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민간지원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협력)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외자·기술유치, 해외세일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전문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민간지원기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경비 등의 지원) ①민간지원기구의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액 등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지원기구의 운영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지원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외자·기술 유치활동에 따른 수수료
2. 해외 세일즈 활동에 따른 수수료
3. 기타 기금의 운영 등에 의한 잡수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당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외자·기술유치단원의 성과에 대한 수당
2. 해외 세일즈단원의 성과에 대한 수당
3. 민간지원기구의 활동과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20조(기금의 운용)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과장이 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무역상담실

제24조(기능) 무역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바이어와의 수출입상담 및 통역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국내외 시장진출 및 해외시장개척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기업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
4.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
5. 기타 무역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상담위원 등) ①무역상담실에는 무역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3인 이내의 상담위원과 1명의 보조원

을 들 수 있다.

②상담위원은 상담내용을 상담일자 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①무역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은 무역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일액 등의 지급) 상담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복무) 상담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자원봉사요원) 무역상담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상담을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0조(민·관협의체 운영) 시와 민간지원기구와의 긴밀한 업무협력 및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10. 10 조례 제1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